

# 유죄? 무죄?...성범죄 '묵시적 동의' 법 적용 논길

## 광주지법 '판결 2제' 보니

♣.A씨는 사귀던 여성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성은 몰래 촬영한 게 아니고 당시 삭제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남성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까.

♣.B씨는 한 달 전 처음 알게된 뒤 주 2~3회 가량 만난 여성과 야간 드라이브를 하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남성은 이미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평소 드라이브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해진 스킨십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성의 동의를 얻은 결과.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다양해지는데다, 남녀 관계의 특성상 서류만으로는 어디까지가 동의이고 거부인지 판단하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 사귀던 여성 나체 촬영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사진 촬영사실 알았을 가능성 있고 항의·삭제 요구 등 없어 "무죄"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정립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의 기본이나 의사보다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만 접근했다가 처벌 받은 남성, 정신적 피해(수치심)를 입었다는 문제제기에 과도한 대응이라는 판결을 받은 고소인 여성 등 기존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 용출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사귀던 여성이 호

## 드라이브 중 강제추행

이전 성관계 항의 문자 보냈고 인적 드문 곳 추행 두려움 느껴 묵시적 동의 해당 안돼 "유죄"

텔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찍었다는 게 기소 요지다.

A씨는 연인 사이였고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여성이 확인까지 했고 당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촬영 사진이 가까이 접근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각도·거리 등을 고려하면 촬영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연인관계였고 사진 존재를 알고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A씨 손을

들어줬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여성 진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판단한 사례도 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밤에 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잡고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B씨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고 매주 3~4회 가량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함께 드라이브할 때도 늘상 이뤄지던 스킨십의 하나였다. 사건 당일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지만 거부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손을 남성 손위에 올

려놓기까지 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성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 2~3회 만났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해서 이뤄진 게 아니고 이때를 제외하면 연인 사이에서 이뤄질 만한 스킨십이 없었던 점, 또 문제의 사건 전에 여성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성적 행위를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 예상할 수 있는 스킨십으로 추행이 아니다'는 B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밤 11시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피해자로서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신고 경위 등을 보충해 피해자가 처한 앞뒤 맥락을 좀 더 살펴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3차례 침수피해 중흥 3구역 복구, 아파트 공사 중지명령 침수방지 대책은 공개 안해

광주시 복구가 중흥 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일대 3차례 침수피해 <광주일보 7월 30일 6면>와 관련, 조합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복구는 구체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공개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복구에 따르면 구는 중흥 3구역 재개발조합 현장 일대 주택가 침수 피해와 관련,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복구는 지난 31일까지 조합측에 요구한 장·단기 침수피해 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관련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건설사 측이 제시한 계획서대로라면 8월 중순까지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복구는 추가되는 방재대책 수준을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복구가 이미 1~2차례 침수 이후 관로를 교체하고 배수펌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가 또다시 발생한 침수 피해로 '무사안일한 재해대책 수준을 3차례 침수가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또 부실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구 관계자는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며 "조합 측의 빠른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복구 중흥 3구역 제일풍경채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7월 한 달동안 3차례(10·13·29일) 침수 피해가 발생해 십여대의 상가와 주택이 물에 잠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구조활동 중 순직 김국환 소방관 영결식

### 안전줄 구조 때 2명만 출동 인력 부족문제 대책 등 필요

순직한 고 김국환 소방관의 영결식이 2일 전라남도청장(翁)으로 거행됐다. 고 김국환 소방대원은 지난 31일 오후 2시 49분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서 5명이 불놀이하던 중 1명이 불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대원과 즉시 선발대로 출동해 현장 활동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렸다. 이후 18분 만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생을 달리하게 됐다. 이날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수상구조대 활동은 28세 젊은 소방대원의 마지막 구조 활동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내·외빈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및 훈장 추서, 조사, 조전, 동료 고별사, 헌화 및 분향, 조총 발사 등이 진행됐다. 장례위원장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맡았다.

이후 국립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됐다. 고 김국환 소방대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최연소로 육군 특전사로 입대한 중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2월 보성소방서 구조대원으로 임용됐다. 등산과 스킨스쿠버에 뛰어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3년차 인솔해 1월 소방교로 승진하면서 본인이 희망했던 산악119구조대에 배치됐다. 그동안 1480건의 출동을 통해 540명을 구조

했으며, 지난 2018년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소방학교 표창을 받기도 했다.

친분이 깊은 동료 소방관은 "만일 내가 세상에 진 빛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해 줘줬다"고 미소 지으며 말하던 국환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번 구조 과정에서 안전줄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4명)이 출동하지 못한 점으로 부족한 인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평소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안전줄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에 나서는데 이때 최소 4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본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에는 선발대로 2명만 출동한데다, 상황이 급박해 자신의 몸을 일반 로프에 결박하고 물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안전줄 대신, 물과 빛에 약하고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낮은 나일론 재질의 로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장비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소방관의 구조 당시 거센 물살에 로프가 바위, 교각 등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용감했던 고 김국환 소방장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민과 소방관들의 안전, 행복에 더욱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광주시 복구가 마스크 쓰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인장사를 찍고 있다. <북구청 제공>

## 5·18 왜곡·비방 동영상 29건 추가 삭제

인터넷을 통해 기승을 부리던 5·18 왜곡·비방 동영상이 추가로 삭제됐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특정 지역을 차별·비하, 폄하한 동영상 29건이 추가 삭제됐다.

이번 삭제 조치는 지난 6월 29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 85건을 유튜브가 삭제한 다음 이뤄진 추가 조치이다. 이번에 삭제된 영상은 동영상 28건, 지만원 TV 계정에서 1건 등 총 29건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 유공자를 비하하거나 폄하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 등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 등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해외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중 4건 중 1건이 성범죄 사건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 사건이 4건 중 1건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 31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수 기준으로 630건으로 전년(665건)보다 35건 줄었다.

전체 재판 사건(1만7948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전년(3.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등(39건), 강도 등(22건), 상해 등(11건) 순이었다. 기타 범죄가 387건이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http://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